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근거 마련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53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기요금·유류비 등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2
가. 안 제20조의2제1항(전기요금·유류비 지원)	5
나. 안 제20조의2제2항(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증설 지원)	1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6. 24.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운영 등에 따른 전력비 부담이 일반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고, 유류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기요금·유류비 등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원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스마트농업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설치·증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제6조), 전문인력 양성(제8조·제9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제11조·제12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제13조), 지원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지정(제14조·제15조)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농업 부문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전기요금 인상이 kWh당 일정 금액을 더하는 정액 인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준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력의 인상률이 다른 계약종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¹⁾

【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 현황 】

(단위: 원/kWh)

계약종별	'21년(A)	'22년	'23년	'24년	'25년 4분기(B)	인상률 (B-A)/A
농사용(갑)	21.9	41.2	49.4	55.9	62.3	184.5%
농사용(을)	39.5	58.8	67.0	73.5	79.9	102.3%
산업용(갑)	89.9	109.2	130.3	138.8	138.8	54.4%
산업용(을)	114.8	138.6	166.4	183.3	183.3	59.7%
주택용	93.6	112.9	134.0	134.0	134.0	43.2%
일반용	116.2	135.5	156.6	156.6	156.6	34.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사용 전기요금 현황」). 농사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1962년 10월부터 별도의 계약종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인상분 21.1원은 3년간 분할하여 적용되었음('23년 8.2원, '24년 6.5원, '25년 6.4원).

앞의 표와 같이 2021년 대비 2025년 4분기의 인상률은 농사용(갑) 184.5%, 농사용(을) 102.3%로서 산업용(갑) 54.4%, 주택용 43.2%, 일반용 34.7%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사용 전력의 공급단가 자체는 다른 계약종별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농사용 전력의 사용량은 2021년 2만 603백만kWh에서 2025년 2만 1,523백만kWh로 4.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요금부담액은 9,467억원에서 1조 9,058억원으로 101.3% 증가하였음.

【 연도별 농사용 전력 사용량 및 요금부담액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용시설 수(천 개소)	2,051	2,122	2,160	2,192	2,211
사용량(백만kWh)	20,603	21,420	20,763	21,088	21,523
요금부담액(억원)	9,467	12,186	15,593	17,319	19,05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또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2026년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그 부담이 다시 확대된 바 있음.

이처럼 전기요금과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 부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 시설은 냉난방·환기·양액공급·환경 제어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특성상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 지원을 통하여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증설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0조의2제1항의 전기요금·유류비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증설 지원은 지원의 성격과 현행 제도와의 관련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안 제20조의2제1항(전기요금·유류비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요금과 유류비 상승으로 농업 부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유류비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안 제20조의2제1항(이하 “안 제1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²⁾

첫째, 전기요금·유류비의 직접 지원은 현행법의 목적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방식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2조제1호는 “스마트농업”을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2)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기요금·유류비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정보다는 경영안정 지원 성격이므로, 농어업경영체법 등 별도 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개정안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음.³⁾

즉, 현행법은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절감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 및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반면, 안 제1항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기술의 도입이나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보다는 경영안정 지원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지원을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지원의 기준·절차 및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전기나 유류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할 경우 에너지 절약의 유인이 약화되어, 안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증설 지원의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지원한도를 설정하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을 지원 요건에 반영하는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소비 절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보다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둘째, 기존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및 안 제1항을 별도로 신설할 입법적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일반적 지원 근거를 이미 두고 있음⁴⁾.

그런데, 안 제1항은 지원요건을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규정하여 상기 조항보다 지원요건이 포괄적인 반면, 지원대상은 스마트농업 경영자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와, 스마트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류비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 제도와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용 경유 및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의 가격 인상분 일부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및 집행실적 】

연도	구 분	예산(억원)	실집행액(억원)	집행률(%)
'24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70	-	0
'26년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529	363	68.6
'26년	시설농가 난방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94	21	22.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024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예산 70억원 중 집행실적이 없었고, 2026년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의 집행률도 22.9%에 그치고 있음.

다만,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집행실적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유가가 지급기준에 미달한 것인지, 지원대상·지원단가 또는 집행절차의 제약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에는 현행 지원제도의 운용상 한계와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근거 신설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 지원기능이 중첩되거나 동일한 비용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지원요건 및 제도 간 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스마트농업 경영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데 따른 형평성 및 지원대상의 명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농업 시설은 냉난방·환기·양액공급·환경제어 설비 등을 가동하는 특성상 전력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냉난방·환기 등의 설비는 일반 시설원예·축산 농가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전기요금과 유류비 부담이 스마트농업 경영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스마트농업의 보급 비율은 2025년 기준 시설원예의 경우 전국 시설원예 면적의 17.5%, 축산의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10.4% 수준임.

【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20~'25년)⁵⁾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스마트농업(시설원예) 정책 보급면적(누적, ha, 국비 지원사업 기준)	5,985	6,540	7,496	8,196	8,955	9,720
전국 시설원예 면적(채소+화훼, ha)	54,527	55,275	54,850	55,141	55,536	-
시설원예 정책 보급비율(% , 국비 지원사업 기준)	11.0	11.8	13.7	14.9	16.1	17.5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수(누적, 호)	3,463	4,743	6,002	7,265	8,674	9,708
전국 축산농가 수(호)	108,656	109,113	106,207	101,517	95,944	95,904
축산농가 대비 도입비율(%)	3.2	4.3	5.7	7.2	9.0	10.1
축산 전업농 대비 도입비율(%)	11.8	15.3	18.9	22.9	28.2	31.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5) 2025년 시설원예 면적은 2026년 말 발표 예정

상기 표와 같이 스마트농업이 보급되지 아니한 시설원에 면적은 전체의 80%를 넘고, 스마트축산을 도입하지 아니한 축산농가도 전체의 약 90%에 이르므로, 이들 역시 전기요금과 유류비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스마트농업 시설의 에너지 의존도와 정책적 육성 필요성을 고려하되, 유사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는 일반 시설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안 제1항의 “스마트농업 경영자”는 현행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안 제2항의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자”와도 표현이 서로 다르므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의 확대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의 마련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항은 전기요금·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게 됨.

특히, 전기요금과 유류비는 영농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에너지 수급불안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그 지원 역시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지원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세부 범위와 지원단가·지원기간 및 보조율 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재정소요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스마트농업 경영체에 한정된 수치는 아니나, 농사용 전력의 요금부담액 총액이 2025년 1조 9,058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대상을 스마트농업 경영체로 한정하더라도 지원단가와 보조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재정소요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스마트농업의 보급 비율이 시설원예의 경우 2020년 11.0%에서 2025년 17.5%로, 축산의 경우 같은 기간 3.2%에서 10.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지원대상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단가·지원기간 및 보조율 등에 따른 예상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방안과 지원한도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안 제20조의2제2항(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증설 지원)

다음으로, 안 제20조의2제2항(이하 “안 제2항”이라 한다)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증설 지원은 스마트농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입법목적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⁶⁾

다만, 안 제2항의 “에너지 절감시설”은 그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스마트농업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 하되,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항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을 경영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상기 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하므로, 상기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실제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6) 농림축산식품부도 제2항에 대하여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⁸⁾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을 통하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최근 3년간 매년 165억원에서 174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채소·화훼·과수·버섯류 재배시설의 열원 전환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산 및 지원실적 】

구 분	'24년	'25년	'26년(7월 기준)
예산(백만원)	17,363	16,495	16,837
결산·집행(백만원)	16,873	16,495	14,254
지원실적(개소)	41(47.6ha)	28(50.3ha)	68(79.7ha)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위 사업의 지원품목이 채소·화훼·과수·버섯류 재배시설로서 스마트 시설원예를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지원은 기존 사업과 상당 부분 중첩될 소지가 있으나,

기존 사업은 ‘재배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축산 시설’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사업만으로 스마트농업 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에 스마트농업 시설을 명시하거나 스마트축산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사업의 지원실적 중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지원실적만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통한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현황과 개정안에 따른 지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동일한 시설비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사업 간 조정기준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2항은 지원대상 행위를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기존 설비를 개선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기존 설비의 증설은 추가적인 설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행위를 “설치 또는 개선”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⁹⁾

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26